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(변경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합니다.

※ 기존 사천시 고시 제2021-92호는 본 고시로 변경

2021년 4월 26일

사 천 시 장



1.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

1) 적용대상 :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

구분		대상 시설
중점 관리 시설 (11종)	집합 제한	▲유흥시설 5종(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/무도장 포함) ▲홀덤펍 ▲노래연습장 ▲실내 스탠딩공연장 ▲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▲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무인카페) ▲파티룸
일반 관리 시설 (15종)	집합 제한	▲PC방 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학원(교습소 포함) ▲직업훈련기관 ▲공연장 ▲영화관 ▲놀이공원·워터파크 ▲오락실·멀티방 ▲목욕장업 ▲실내체육시설 ▲이·미용업 ▲대형마트 ▲상점·마트 (300㎡이상)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
기타 시설 (2종)	집합 제한	▲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▲숙박시설

2) 처분당사자 : 사천시내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3)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사항 *시설별 방역수칙

4)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
구 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	
중점관리시설	<p>공통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 설치·이용 의무, 환기·소독,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
	<p>유흥시설 5종, 홀덤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 불가) ▶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 착용
	<p>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
	<p>노래연습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이용한 룸과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	<p>실내 스탠딩 공연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▶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
	<p>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무인카페 포함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식당·카페 모두 22시 ~ 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	<p>파티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
구 분	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일 반 관 리 시 설	공통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
	실내체육시설	▶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	결혼식장/장례식장	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	목욕장업, 오락실·멀티방 등	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	영화관, 공연장	▶ 음식 섭취 금지 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	PC방	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	학원(독서실 제외) ·교습소· 직업훈련기관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▶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,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	독서실·스터디카페	▶ 음식 섭취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하고, 22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	이·미용업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
	놀이공원·워터파크	▶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
	대형마트	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 ▶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금지 ▶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 등) 이용금지
	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	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
기 타 시 설	공통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
	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	▶ 의료기기 대수 당 1/2 이용인원 제한, 마스크 착용 등 ▶ 출입자 명부 작성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등 사용 의무
	숙박시설	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 문 게시

※ 단, 음식섭취 금지하더라도 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
2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

1) 적용대상

구 분	내 용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▶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, 위반시 과태료 부과
사적모임	<p>▶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</p> <p>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,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, ⑦ 돌잔치 전문점</p> <p>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</p>
기타 모임·행사	<p>▶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</p> <p>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</p> <p>▶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</p>
스포츠 관람	▶ 10% 이내로 관중 입장
국공립시설	<p>▶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의 경우 운영 중단</p> <p>▶ 이외 시설은 30%로 제한</p>
사회복지시설, 어린이집	▶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
종교활동	<p>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% 이내 제한</p> <p>▶ 종교시설 주관의 대면 모임·식사 금지</p>
직장근무	<p>▶ 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</p> <p>▶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</p> <p>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p> <p>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</p> <p>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</p> <p>▶ 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한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</p>
교통시설 이용	▶ 마스크 착용 의무화,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 항공편 제외)
등 교	▶ 밀집도 1/3 준수(고교 2/3)

- 2) 처분당사자 : 사천시내 각 시설·장소 등의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- 3) 처분내용 :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

3. 처분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, 2의2, 2의3, 2의4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

4. 처분기간 : 2021. 4. 26.(월) 0시 ~ 2021. 5. 2.(일) 24시, 1주간

※ 처분기간 종료 후에는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

5. 처분사유 :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 4. 26.(월) 0시부터
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
- 1)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·운영자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의2, 2의3, 2의4,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,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의한 집합제한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3) (특별조치)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 2주간 집합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.

9. 소관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

구 분	담당부서	연락처	비고
▶ 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 ▶ 단란주점 ▶ 헌팅포차 ▶ 식당.카페(일반음식점.휴게음식점.제과점영업)	보건위생과	831-3616	
▶ 콜라텍	소방서 예방안전과	830-9232	
▶ 노래연습장 ▶ PC방 ▶ 오락실.멀티방 ▶ 영화관	문화체육과	831-2710	
▶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지역경제과	831-3068	
▶ 공연장	문화체육과	831-2710	
▶ 놀이공원, 워터파크	관광진흥과	831-2726	
▶ 실내체육시설	문화체육과	831-2410	
▶ 결혼식장	여성가족과	831-2665	
▶ 장례식장	노인장애인과	831-2691	
▶ 목욕탕.이.미용업.숙박업	보건위생과	831-3612	
▶ 학원, 독서실	평생학습센터	831-2585	
▶ 마트.백화점	지역경제과	831-3060	
▶ 스터디카페	평생학습센터	831-2585	
▶ 실내 스포츠 경기장	문화체육과	831-2410	
▶ 체험방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	치매관리과	831-3741	